

2019.05.29

'납세도움정보' 활용 혜택 안내

I. 개요

관세청 내 '납세도움정보 서비스' 를 도입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I. 주요사항

1. 시행사유

- 수입기업에게 자료 제공을 통한 납세오류 위험 방지
- 납세사항 점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최소화
- 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탈세조사 위험성 예방

2. 시행내용

1) 프로그램 소개

- 세적자료, 외환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납세오류 가능성 진단
- 해당 기업 관련 유권해석, 세법개정 내용 등 정보 제공
- 과세가격 누락, 세율 착오 등 자율적 납세사항 점검
-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숨은 환급금 찾기 등 절세 팁 제공

2) 신청방법

- 기업 직접 신청시 납세도움정보 수령 동의서 작성하여 관할 세관 신청
- 관세사 등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납세도움정보 수령 동의서 및 위임장 작성하여 관할세관 신청

2019.05.29

'납세도움정보' 활용 혜택 안내

II. 주요사항

2. 시행내용

3) 정보 활용 수정신고 시 혜택

- 해당 건 '관세조사' 제외 및 '세액심사' 면제
- 해당 건 새로운 유권해석 등으로 인한 추가 징수 발생시 가산세 면제
- 납부세액 부담 시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
-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및 신고 오류점수 면제

4) 납세도움정보 제공 내용

▶ 세관 신고 · 신청 현황 (8개 항목)

- | | |
|------------------|---------------------|
| 1. 수입 실적 | 5. 보세공장 과세보류 실적 |
| 2. 납세 실적 | 6. 수출 실적 |
| 3. 감면 실적 | 7. 관세 환급 실적 |
| 4. FTA특혜관세 활용 실적 | 8. 벌금, 과징금, 체납 등 실적 |

▶ 납세 유의사항 (8개 항목)

- | | |
|------------------------|-------------------------|
| 1. 수입금액 - 외환지급액 비교 | 5. 공제금 신고액과 외환지급액 비교 |
| 2. 공급자별 수입액 - 외환지급액 비교 | 6. 품목분류 (신고HS와 경합되는 HS) |
| 3. 수입품목 신고단가 비교 | 7. 당사의 품목분류 사전회신 |
| 4. 가산금 신고액과 외환지급액 비교 | 8. 환급률 내역(HS별, 연도별 추이) |

▶ 절세 Tip 등 안내사항 (7개 항목)

- | | |
|----------------------|---------------------|
| 1.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 5. 자진신고 시의 혜택 안내 |
| 2. FTA 세율 적용 안내 | 6. 외환 거래 관련 신고의무 안내 |
| 3. 부가세 납부유예 제도 안내 | 7. 과세가격 결정방법 자가 점검표 |
| 4. 납기연장 · 분할납부 제도 안내 | |

2019.05.29

'납세도움정보' 활용 혜택 안내

II. 주요사항

2. 시행내용

4) 납세도움정보 제공 내용

▶ 납세진단 유형별 유의사항 (37개 항목)

- | | | |
|------------------|--------------------|----------------|
| 1. 무상 수입 | 14. 음향·영상관련 사용료 | 27. 상계(무역과 기타) |
| 2. 임차 물품 | 15. 기타 지식재산권 사용료 | 28. 재수입면세 |
| 3. 수탁판매 의뢰 물품 | 16. 광고비 | 29. 재수출면세 |
| 4. 특수관계자 재화 매입 | 17. 컴퓨터 관련 서비스 비용 | 30. 잠정가격신고 |
| 5. 특수관계자 무형 자산 | 18. 컴퓨터 프로그램 매입 비용 | 31. 소요량산정 |
| 6. 특수관계자 용역 거래 | 19. 소프트웨어 지재권 사용료 | 32. 업종별 평균 환급률 |
| 7. 결제통화 | 20. 컨설팅 서비스 비용 | 33. 사후관리물품 |
| 8. 운임 단가 | 21. 홍보 서비스 비용 | 34. 원산지표시 위반 |
| 9. 거래조건 (E,F) 운임 | 22. 기타 사업서비스 비용 | 35. BASIL SEED |
| 10. 특허권 사용료 | 23. 기타 잡용역 비용 | 36. 주류 관련 |
| 11. 상표권 사용료 | 24. 계열사간 서비스 비용 | 37. 부가가치세 감면 |
| 12. 영업권, 판매권 사용료 | 25. 영리법인 이전 거래 | |
| 13. 산업공정·디자인 사용료 | 26. 상계(무역과 무역) | |

5) 납세도움정보 서비스 제공 현황

- 전국 34개 세관 '전담 상담창구' 설치·운영 및
성실신고 지원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 서비스 확산 계획 예정
- 유니패스(전자통관시스템)를 통한 '웹 서비스' 하반기 도입 예정

◇ 납세도움정보 활용 혜택 안내문 및 서비스 문의처: "붙임"

◇ 시행일자: 2019.04.17

납세도움정보 활용 혜택 안내

- 납세도움정보를 활용하여 납세신고의 오류를 치유하고 성실히 신고납부 할 경우,
- 해당 납세신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구분	납세도움정보 활용 (납세진단)	납세도움정보 활용 과정에서 세관확인을 받은 경우 (세부 납세진단)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수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중견기업 (수입금액 300억원 이하)
오류 치유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도움정보를 활용하여 기업이 스스로 납세오류 치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도움정보를 활용하여 기업이 스스로 납세오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 발생하는 의문점에 대해 세관에 질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
세관의 검토·확인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세관 성실신고지원팀이 납세오류 치유 사실 확인 (원칙 : 서면확인, 예외 : 방문)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유된 납세신고 건에 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 수출입신고 오류점수 면제 ● 납기연장, 분할납부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유된 납세신고 건의 납세신고 세부 항목(예 : 운임, 로얄티 등)에 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조사 제외 ● 세액심사 면제 ● 가산세 면제(해당 항목에 대해 새로운 유권해석 등으로 추가 징수 발생시)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 수출입신고 오류점수 면제 ● 납기연장, 분할납부 허용

붙임 1**전국세관 상담 창구** **지역별 문의처**

지역	세관	전화번호	세관	전화번호
인천	인천세관	032-452-3325	수원세관	031-547-3971
	김포공항세관	02-6930-4943	안산세관	031-8085-3820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032-720-7444		
서울	서울세관	02-510-1320	청주세관	043-717-5724
	안양세관	031-596-2024	성남세관	031-697-2584
	천안세관	041-640-2326	파주세관	031-934-2828
부산	부산세관	051-620-6916	창원세관	055-210-7635
	김해공항세관	051-899-7262	마산세관	055-981-7032
	북부산세관	051-793-7123	경남남부세관	055-639-7534
	양산세관	055-783-7326	경남서부세관	055-750-7909
대구	대구세관	053-230-5356	포항세관	054-720-5732
	울산세관	052-278-2264	속초세관	033-820-2144
	구미세관	054-469-5643	동해세관	033-539-2671
광주	광주세관	062-975-8183	여수세관	061-660-8652
	광양세관	061-797-8435	군산세관	063-730-8732
	목포세관	061-460-8542	제주세관	064-797-8852
	대전세관	042-717-2259	전주세관	063-710-8974
평택	평택세관	031-8054-7117		

붙임 2**납세도움정보 제공 내용**

가. 세관에 신고·신청한 현황 (8개 항목)

- | | |
|------------------|---------------------|
| 1. 수입 실적 | 5. 보세공장 과세보류 실적 |
| 2. 납세 실적 | 6. 수출 실적 |
| 3. 감면 실적 | 7. 관세환급 실적 |
| 4. FTA특혜관세 활용 실적 | 8. 벌금, 과징금, 체납 등 실적 |

< 예시1 : 수입실적 >

< 활용 > : 최근 5년간 당해기업의 수입실적을 연도별로 확인

(단위 : 건, 천불)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반수입형태	692	68,971	701	67,854	651	64,828	627	63,287	705	71,358
무상수입	45	822	41	785	38	664	36	631	49	924
대체수입	40	143	38	117	31	106	29	109	47	155
기타	62	312	59	303	68	329	55	301	71	473
합계	839	70,248	839	69,059	788	65,927	747	64,328	872	72,910

* 주요 수입물품 : 의료용품(30) \$88,987,015 , 유기화합물(29) \$55,114,582

나. 납세 유의사항(8개 항목)

- | | |
|------------------------|-------------------------|
| 1. 수입금액-외환지급액 비교 | 5. 공제금 신고액과 외환지급액 비교 |
| 2. 공급자별 수입액-외환지급액 비교 | 6. 품목분류 (신고HS와 경합되는 HS) |
| 3. 수입품목 신고단가 비교 | 7. 당사의 품목분류 사전회시 |
| 4. 가산금 신고액과 외환지급액 비교 | 8. 환급률 내역(HS별, 연도별 추이) |

< 예시2 : 수입품목 신고단가 비교 >

< 활용 > : 당해기업의 세관에 신고한 수입품목(HS코드)별 단가(세관신고 기준)를 비교하여 최고 가격과 최소 가격의 차이가 100% 이상 나는 내역을 확인하고, 그 신고오류 여부를 검토

<귀사의 신고내용 '14년~'18년 >

< 안내사항 >

HS Code	해외 거래처	결제 방법	규격	규격 단위	원산지	단가(USD)			
						최대값 (A)	최소값 (B)	차이 (C=A-B)	증감 (C/B)
3004.20-9900	A	TT	A	KG	CN	201	57	144	253%
2933.99-9090	B	GN	B	EA	US	134	47	87	185%

확인 사항

평균단가 보다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 신고내역 안내 (세관에 신고한 모델규격별 단가의 편차가 100%이상 차이나는 수입신고 내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부세관 성실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납세진단 유형별 유의사항 (37개 항목)

- | | |
|-------------------------|-----------------|
| 1. 무상 수입 | 20. 컨설팅 서비스 비용 |
| 2. 임차물품 | 21. 홍보 서비스 비용 |
| 3. 수탁판매 의뢰 물품 | 22. 기타 사업서비스 비용 |
| 4. 특수관계자 재화매입 | 23. 기타 잡용역 비용 |
| 5. 특수관계자 무형자산 | 24. 계열사간 서비스 비용 |
| 6. 특수관계자 용역거래 | 25. 영리법인 이전거래 |
| 7. 결제통화 | 26. 상계(무역과 무역) |
| 8. 운임 단가 | 27. 상계(무역과 기타) |
| 9. 거래조건(E, F) 운임 | 28. 재수입면세 |
| 10. 특허권 사용료 | 29. 재수출면세 |
| 11. 상표권 사용료 | 30. 잠정가격신고 |
| 12. 영업권·판매권 사용료 | 31. 소요량 산정 |
| 13. 산업공정·디자인 사용료 | 32. 업종별 평균 환급률 |
| 14. 음향·영상관련 사용료 | 33. 사후관리물품 |
| 15. 기타 지식재산권 사용료 | 34. 원산지표시 위반 |
| 16. 광고비 | 35. BASIL SEED |
| 17. 컴퓨터 관련 서비스 비용 | 36. 주류 관련 |
| 18. 컴퓨터 프로그램 매입 비용 | 37. 부가가치세 감면 |
| 19.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료 | |

< 예시3 : 무상 수입 >

< 활용 > :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의 과세가격 신고에 착오가 없는지 검토

구분	안내사항
무 상 으 로 수 입 하 여 수 입 물 품 의 가 치(가 격)을 책 정 하 기 가 근 랑 한 기 업 이 유 의 할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해외공급자가 임의로 제시하는 가격(송장 상의 Noncommercial Value)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세관에 착오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세관 신고(최초 신고 및 정정 신고)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사가 수입신고시 무상으로 신고한 물품은 17건 348,587,665원이며, 해외거래처 별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회기간 : 2014년 ~ 2018년
	1. altone INC (CN) : 10건, 258,695,255원 (수입신고번호 : 80204-17-115536U 등) 2. zhamvitt GMBH (EU) : 7건, 89,892,410원 (수입신고번호 : 80204-17-135875U 등)

< 예시4 : 거래조건 E, F 운임 >

< 활용 > : 국제무역거래 조건(incoterms)이 E, F조건일 경우, 운송용역 대금을 세관 신고 시 누락하지 않았는지 검토

구분	안내사항
물 품 수 입 시 거 래 조 건 (incoterms)상 E, F조건으로 국 제 거 래 계 약 을 체결한 기 업 이 유 의 할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물품대금 및 물품과 관련된 용역대금(관세법 제30조의 특정된 용역)을 합산하여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품 선적항에서 국내 도착항 까지의 운송용역 대금도 과세가격에 합하여 세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세관 신고(최초 신고 및 정정 신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사가 수입신고 시 운송용역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과세가격에 합산하는 과정에서 “0원” 또는 “1원”을 합산하는 오류가 발생한 수입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입신고번호 : No.21990-18-604972M, No.25832-17-478569M, No.25832-17-478569M 등 15건

4. 절세 Tip 등 안내사항 (7개 항목)

- | | |
|--------------------|---------------------|
| 1.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 5. 자진신고 시의 혜택 안내 |
| 2. FTA세율 적용 안내 | 6. 외환 거래 관련 신고의무 안내 |
| 3. 부가세 납부유예 제도 안내 | 7. 과세가격 결정방법 자가 점검표 |
| 4. 납기연장·분할납부 제도 안내 | |

< 예시5 : 관세 환급금 찾아가기 >

< 활용 > : 물품 수출 후 관세환급 받지 않은 현황을 확인하고, 환급신청을 통한 절세에 활용

안내 사항

- 아래는 귀사에서 수출 후, 수출품 제조에 소요된 수입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을 받지 않은 현황입니다. 반드시 상세확인을 거친 후, 환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신고번호-란	신고 수리일	사업자번호	HS부호	수출신고가격	예상환급액
120-85-1710004-4X-001	17.10.12	214-87-63681	3304.99-1000	78,931,363	552,519
425-03-1770000-9X-003	17.02.10	214-87-63681	3304.99-2000	33,499,905	234,499
120-85-1803036-1X-001	18.03.21	214-87-63681	3304.99-1000	55,412,582	277,062
⋮				⋮	⋮
합 계				62,374,084,807	419,436,513

* 위 수출신고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신청시 관계법령에 따른 상세 법령 검토를 거쳐 환급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6 : FTA세율 적용 안내 >

< 활용 > : 수입물품의 HS, 원산지, 규격 등 동일한 물품 중에서 FTA혜택을 받은 물품과 그렇지 못한 물품을 비교하고, FTA혜택 신청을 통한 절세에 활용

안내 사항

- 아래는 귀사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 FTA특혜를 받은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 현황입니다. FTA특혜를 받지 못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통관 이후라도 FTA세율적용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내용 >

관세율	HS	협정 적용	2018년		2019년	
			건수	금액(USD)	건수	금액(USD)
한·중 FTA 협정세율	4011.20-1090	적용	28	4,617	55	12,424
		미적용	110	11,235	12	2,587
한·미 FTA 협정세율	4002.19-0000	적용	32	2,135	72	5,442
		미적용	-	-	18	958
한·인도 FTA 협정세율	4011.10-1000	적용	18	838	46	2,773
		미적용	5	159	11	685

* FTA세율적용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이후, 1년 안에 할 수 있으며, 1년 경과시 신청이 불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